

# 大學圖書館 職務分析에 관한 研究

—職務資質要件에 관해서—

高 聖 秀  
慶北大圖書館

編輯者註: 本稿는 1977年度 啓明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의 要約임.

## 1. 緒 論

### A. 研究의 目的

「大學은 國家와 人類社會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廣範하고 精緻한 應用方法을 教授研究하며 指導의 人格을 陶冶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大學教育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施設로서 가장 核心의인 施設이 大學圖書館인 것이다.

大學의 質的인 發展은 大學圖書館의 發展을 前提 要件으로 한다. 그러면 大學圖書館의 質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問題인가 하는 것을 究明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本 論文에서는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效果的인 機能을 제대로 發揮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司書들의 職務資格要件이 圖書館機能發揮에 適合하도록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보고 現職 司書들의 資質要件實態를 考察하여 問題點을 把握하여 그 改善策이 있어야 하겠으므로 本 研究가 試圖하는 目的은

첫째, 大學圖書館의 基本機能을 밝히고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當面한 諸問題中 圖書館의 가장 基本的 構成要素인 專門職司書의 職務資質要件에 관한 現況을 把握하고,

둘째, 大學圖書館 司書의 職務資質要件分析을 하고 그 問題點을 搞出하여 改善策을 提示함으로써 大學圖書館의 職務遂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 B. 研究의 方法

本 研究는 實際上의 圖書館職務를 中心으로 考察하여 問題點을 把握하고 그 代案을 提示하는 方法을 取하였다.

資料 調査方法은 ① 理論的 背景을 위해 文獻調査를 하고, ② 現況把握을 위해 職務分析質問紙를 使用하였

다. 對象은 國立大學校圖書館 專門職司書 職務擔當者 112名에게 職務分析質問紙를 配付 이를 回收하였다. 調査期間은 1976年 8月 15일부터 8月 25日까지 實施하였다.

### C. 研究의 範圍

本 論文의 研究範圍는 專門職 司書의 職務內容과 司書의 資質要件 實態만을 考察하였다.

職務分析의 實態調査는 國立綜合大學校圖書館 專門職司書 職務擔當者에 局限시켰기 때문에 이를 全大學圖書館 專門職司書에게 一般化할 수 없을 것 같다.

## II. 研究의 理論的 背景

### A. 職務分析에 관한 一般의 理論

#### 1. 職務分析의 意義와 目的

오늘날의 經營에서 人間은 職能 推進者로서의 資格面에서 把握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여 불태 職務內容이 組織的인 解明을 任務로 하는 職務分析은 人間 勞動力의 合理的인 管理를 具體化하기 위한 前提로서 實施하지 않으면 안되는 節次인 것이다.<sup>1)</sup> 이 職務分析에 대한 代表的인 定義를 紹介하면, 職務分析이라 함은 美國勞動省 編「職務分析書」에 의하면 「觀察과 研究에 의하여 特定職務의 性格에 관한 適切한 情報를 決定하고 報告하는 手續」<sup>2)</sup>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定義를 다음에 記述하는 바와 같이 職務分析의 諸目的을 共通으로 包含하는 一般的인 意義와 內容인 것이며 具體的인 分析段階에 있어서는 그 目的에 따라 많은 變形이 要求된다.

#### 2. 職務分析의 重要役割

1) 姜應五, 現代人事管理論, (서울: 博英社, 1974), p. 118.  
2) Department of Labor, United State Employment Service Occupation Analysis and Industrial Service Division, *Training and Reference Manual for Job Analysis*, (1944), p. 1을 引用한 張永健, 職務給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成均館大學校經營行政大學院 碩士論文, 1973), p. 7.

職務分析 結果의 利用 乃至 職務記述書 利用에 關하여는 諸學者에 따라 여러가지를 列擧하고 있으나 前記한 美國 勞動省 編의 「職務分析書」에서 指定하고 있는 重要한 役割은 다음과 같다.<sup>3)</sup>

①職務給 賃金制度 ②合理的 採用 및 配置 ③教育訓練 ④組織確立 ⑤安全管理이다. 以上과 같이 職務分析은 人事管理의 具體의 展開에 만드시 必要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는 것이므로 職務分析의 結果는 人事管理의 各 分野에 幅넓게 利用되는 重要한 手段이 되는 것이다.

B. 大學教育和 圖書館의 機能

1. 大學教育和 大學圖書館

「實力있는 大學을 만들기 위하여 形式的學點制를 止揚하고 課題中心制를 實施하여 研究뿐 아니라 授業 助成에도 힘써야 한다」<sup>4)</sup>라고 함은 教室講義를 대하여 學生들에게 몇가지 主題에 대한 情報를 注入하고 他人의 結論을 紹介하는데 그치는 式的 受動的인 現大學授業 方法에 比해 課題를 通하여 學生들이 能動的으로 自身들의 教育에 參考하게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다.<sup>5)</sup>

이와 같이 大學圖書館은 教育의 한 能動的인 機構로서 運營되어야 하며 圖書館 利用은 이러한 點에서 하나의 教育方法으로서 即, 在來式 講義方式을 새로운 教育方法으로 그 意義를 갖는 것이다.

2. 大學圖書館의 機能

참다운 大學은 人的 資源을 開發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知識을 保存하고 解釋하고, 發展시키기 위하여 存在한다.<sup>6)</sup> 眞正 大學다운 大學으로 發展시키기 위해 積極的이고 強力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奉仕機構가 곧 大學圖書館일 것이다.

美國의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Committee on Standard에 나타난 大學圖書館의 機能을 보면, “大學圖書館은 大學社會의 가장 重要한 知的 資源이어야 한다. 適切한 數의 有能한 職員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그 奉仕는 一般의 事業目的을 成就하고 나아가 그 大學의 特殊教育目的을 達成하도록 調整되어야 한다”<sup>7)</sup>라고 하였으며, 또한 椎名六郎은 大學圖書館의 機能을 “첫째, 大學內의 서비스機關, 둘째, 大學內의 情報 센터, 셋째, 大學內의 研究·調査機關”<sup>8)</sup>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3. 大學圖書館의 重要業務

圖書館의 館種에 關係없이 現代圖書館이 그 機能을 圓滿히 發揮하기 위하여 遂行하여야 할 여러가지 業務가 있겠으나 便宜上 大學圖書館의 專門의 業務에 限하여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大別하여 본다.

a. 收書業務

收書業務란 圖書館이 諸資料의 收集, 選擇 및 除籍廢棄에 관한 全般的인 計劃과 業務遂行上 必要한 基本의 手續과 決定<sup>9)</sup> 등이다.

收書業務中 重要한 專門의 業務

①資料購入 計劃의 樹立 ②資料購入 豫算의 調整 ③資料選擇 方針의 樹立 ④各分野의 書誌調査 및 選擇 ⑤資料選擇 및 資料關係會合에 參與 ⑥資料活用 傾向 調査 ⑦出版社, 書籍商과의 相議 및 情報蒐集 ⑧寄贈圖書의 受贈與否의 決定 ⑨資料交換과 寄贈의 決定 및 監督 ⑩各種 收書關係書類 및 帳簿의 檢査 ⑪資料蒐集에 關하여 他部署의 關係職員들과의 協談 ⑫專門圖書, 特殊圖書, 稀貴圖書 등의 選定 및 鑑定 ⑬特定資料의 複寫部數의 決定 ⑭資料購入 및 注文에 關한 決定 ⑮地域社會의 要求의 調査 및 把握 등<sup>10)</sup>이다.

b. 整理業務

資料의 整理란 收集한 各種 資料를 正確, 迅速하게 그리고 容易하게 檢索할 수 있도록 一定한 方針에 의해 藏書로서 組織化하는 技術의 處理이다.<sup>11)</sup>

整理業務中 重要한 專門의 業務

①分類와 目錄에 關한 基本方針과 作業計劃의 樹立 ②分類作業 ③分類體系의 擴張 및 展開 ④主題名作業 ⑤主題名標目的의 擴張 및 展開 ⑥記述目錄作業 ⑦副出·分出記入 및 参照의 決定 ⑧典據目錄의 作成 ⑨目錄 카아드의 複制方法 決定 ⑩目錄編成作業의 監督 ⑪綜合目錄의 編輯과 發行計劃 ⑫目錄作成上의 相互協力 ⑬目錄業務에 必要한 記錄의 決定 및 監督<sup>12)</sup> 등이다.

c. 參考業務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參考奉仕는 그 大學의 모든 學

3) 張永健, 職務給制度의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서울: 成均館大學校經營行政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73), p.7.  
 4) 金相奭, “韓國高等教育的 改革方向”, 地域大學의 特性化 및 高等教育改革方案, 세미나主題講演, 文敎部教育審議會 主催(서울: 1972. 4. 28).  
 5) 崔成眞, “大學圖書館의 教育的機能”, 도철월보, Vol.15. No. 10 (1974. 10), p.2.  
 6) Gelfand, M.A., 大學圖書館, *University Libraries for Developing Countries*, 李炳穆 譯(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p.15.  
 7)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Standards Committee,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20. No. 14(July, 1959), p.274.  
 8) 椎名六郎, 新圖書館學概論(東京: 學藝圖書株式會社 1973), p.187.  
 9) 全國國立大學圖書館長會議 編, 大學圖書館의 業務分析,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68), p.45.  
 10) 李喆珪, 圖書館의 組織과 管理(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pp.95—96.  
 11) 齋掛伊左吉 編, 圖書의 受入·保管·扱出(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67), p.11.  
 12) 全國國立大學圖書館長會議 編, 前掲書, pp.56—62.

생과 敎授에게 敎育資料와 研究資料를 紹介해 주고 그들이 願하는 文獻과 情報를 提供해 주며 圖書館을 보다 効果있게 利用할 수 있도록 그 利用方法을 指導해 주는 一聯의 奉仕活動을 意味한다.<sup>13)</sup>

參考業務中 重要な 專門的業務

①參考書誌業務의 方針設定 ②參考質疑의 應答 ③參考應答資料源의 調査와 應答方法의 指導 ④參考應答의 豫測的 準備 ⑤各種 書誌目錄의 編纂 ⑥參考 및 書誌資料의 組織 및 維持 ⑦書誌索引, 抄錄 등의 作成指導 및 編纂 ⑧圖書館內外 書誌資料調査 및 情報蒐集 ⑨各種 書誌目錄의 發刊計劃 樹立등이다.

d. 閱覽業務

閱覽 및 貸出業務는 圖書館資料를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圖書館奉仕의 第一線을 擔當하는 것으로 大端히 重要하다. 그러므로 美國圖書館協會의 מות인 「必要한 圖書를 必要한 사람에게 必要한 時間에」<sup>14)</sup> 提供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司書의 資質로서 「웃는 얼굴과 웃는 목소리」<sup>15)</sup>로 奉仕하여야 한다는 것을 מות로 삼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다.

閱覽業務中 重要な 專門的業務

①閱覽·貸出規程의 作成 ②閱覽·貸出 및 利用者登錄의 記錄方式의 決定 ③相互貸借業務의 監督 ④閱覽貸出 및 登錄業務의 監督과 報告書의 作成 ⑤利用者の 要望과 苦情의 處理 ⑥目錄의 利用에 관한 援助 ⑦利用者에게 대한 個人的 讀書相談 ⑧圖書館利用을 促進하기 위한 各種 리스트 解題의 編輯 ⑨新入生에 대한 圖書館利用 案内 ⑩各種 그룹과의 協力 ⑪各種案内·揭示의 計劃<sup>16)</sup>등이다.

4. 大學圖書館 專門職 司書의 資質

Louis R. Willson는 “所定の 圖書館學을 專攻한 者로서 훌륭한 行政家가 될 수 있어야 하며, 資料利用者에게 보다 優秀한 情報提供者로서 大學敎育 政策樹立을 위한 有能한 實力者가 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充分한 想像力과 獨創力이 있어야 하며 圖書館運營 및 其他 關聯된 다른 分野에 대한 깊은 理解가 있어야 하며 大學圖書館을 그 大學의 敎育課程에 보다 密接히 關係지을 수 있는 方法을 알아야 한다.”라고 大學圖書館 司書의 專門的 資質의 要求度를 指摘하고 있다.

한 職業이 專門職이나 아니냐를 判別할 수 있는 基準에 대하여는 사람마다 意見을 달리하고 있으나 여러 學者들의 定義를 比較 考察하므로써 그 共通의인 要素를 찾아 專門職의 基準을 세워 보고자 한다.

“후렉스너(Abahan Flexner)”는 6가지로 專門職의 定義를 說明하고 있는데

①專門職은 本質적으로 多量의 個人的 責任을 隨件

하는 知的 作用을 內包한다. ②專門職은 科學과 學習으로부터 그들의 原料를 유도한다. ③專門職은 實際의 이고 明確한 目標를 위하여 이 原料를 發展시킨다. ④專門職은 敎育적으로 傳達할 수 있는 技術을 所有한다. ⑤專門職은 動機에 있어서 愛타적인 면이 增加한다. ⑥專門職은 自體 組織을 가지려는 傾向이 있다.

美國 敎育會의 定義를 들어보면 ①專門職은 本質적으로 知的인 性格을 가진 特殊한 技術과 經驗에 의하여 獲得하고 있다. ②專門職은 目的을 增進시키는 方法으로서 團體를 組織한다. ③目的과 節次에 있어서 統一된 보조를 취한다. ④養成의 基準을 定하고 새 構成員의 能力을 保障한다. ⑤倫理綱領을 採擇하여 業務遂行의 基準을 유지한다. ⑥業務遂行에 있어서 평범한 個人的 自主性을 갖는다. ⑦個人的 利得보다는 愛타주의 奉仕 그리고 社會的 福祉를 앞세운다. ⑧構成員의 個人的 福祉를 增進시킨다. ⑨政府에 대하여 必要한 法律問題에 관한 意見을 提出한다. ⑩社會大衆에 情報를 提供하고 專門職에 관한 信賴感을 增進시킨다.

등이 以外에도 많은 定義가 있으나 여기에서 共通點만을 추출하여 보려는 첫째, 專門職은 그 職務의 遂行에 있어서 高度의 知識水準을 要求하므로써 長期的 敎育訓練을 必要로 하는 一生涯이다. 둘째, 專門職은 個人的 利益보다 民衆의 福祉에, 公衆에 대한 奉仕를 더 遵守한다. 셋째, 專門職은 個人으로서나 集團으로서나 廣範한 責任을 隨伴하는 광범한 自律權을 가지고 團體를 組織하며 業務遂行의 基準을 維持하기 위하여 倫理綱領을 가지고 있다<sup>17)</sup>고 하였다.

그러면 司書職의 專門職으로서의 定義를 들면, 金重漢은 ①國家에서 保護하며 制度的으로 育成하는 資格證制度를 設定 ②學識과 技術, ③奉仕責任, ④所屬機關의 병립적인 忠誠關係 ⑤學術團體의 形成을 專門職이 될 수 있는 要件으로<sup>18)</sup> 들고 있고 圖書館 人事들도 司書職이 高度의 學的 背景과 技術을 必要로 하는 專門職임을 強調하고 있다.<sup>20)</sup> 따라서 훌륭한 司書가 되려

13) 安永柱,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參考奉仕의 問題點”, 圖書館 (1966. 9), Vol.109. p.7.  
13) 李喆珪, 前掲書, pp.96—97.  
14) 竹林態彦, 圖書의選擇(京都: 蘭書房, 1955), p.41.  
15) 竹林態彦, 圖書館의對外活動(京都: 蘭書房, 1956), p. 31.  
16) 全國國立大學圖書館長會議 編, 前掲書, pp.70—79.  
17) Guy R. Lyle, *The administration of college library*, 3rd. ed., (New York: Wilson Co., 1961), p.183.  
18) 金基泰, “司書職制度의 問題點에 關한 考察” 도서관, Vol. 28. No. 5 (1973. 5), p.35.  
19) 金重漢, “圖書館專門職과 關係學問의 계류정” 圖書館學, Vol.1 (1970), p.133.  
20) 李喆珪, “전문직으로서의 사서대우” 國會圖書館報, Vol. 2. No.4 (1965. 4), 金世翹,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인사

면 幅이 넓은 學問과 教授에게 결코 遜色이 없는 程度로 學生에 대하여 關心을 갖고 教育에 獻身함이 必要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大學圖書館의 專門職司書로서 一般的이고 또 專門의인 知識을 具有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學問的 背景이 있어야 하겠다.

①一般敎養 및 語學的 背景 ②圖書館學的 背景 ③專攻分野에 必要한 基礎學 및 補助學的 背景<sup>21)</sup>이라고 하였다. 理想的으로 말하면 專門職司書의 學識이 그가 다루는 主題의 責任對象과 맞먹어야 하며, 大學, 大學院 또는 教授들을 상대로 하는 司書들의 學的 背景은 教授들과 맞먹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大學圖書館의 專門職司書의 重要性과 司書가 具有하여야 할 資質에 대하여 考察하였다.

### Ⅲ. 大學圖書館 專門職司書의 職務資質要件分析

圖書館의 세要素가 施設, 資料, 司書라고 한다면 圖書館을 實質的으로 運營하는 것은 사람 卽, 司書이므로 이 司書의 役割이야말로 圖書館을 發展시키는 바로 미터라고 볼 수 있다.

Washington Library의 Heat氏는 現代圖書館奉仕는 建物이 5%, 資料가 25%, 職員이 70%가 關係된다고 한다. 좋은 職員을 얻는다는 매력적인 人事制度의 確立과 優秀한 圖書館人 養成機關이 必要하다고 하였다<sup>22)</sup>. 이와 같이 볼때 大學圖書館에 從事하는 司書의 資質問題는 重要한 研究課題라 생각되어진다.

그래서 本 研究에서는 現職司書들을 對象으로 資質要件의 實態를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 A. 職務資質의 一般的現況

##### 1. 年齡別 및 性別

職員들의 年齡은 21~25歲와 30~36歲가 各各 29.4%로 가장 많고 31~35歲 15.1%, 36~40歲 12.5%의 順이며, 性別 年齡은 21~25歲의 男子 2.6%, 女子 26.7%, 26~30歲의 男子 17.8%, 女子 11.6%이나 31~35歲는 男子 11.6%, 女子 3.5%로 年齡이 많아짐에 따라 女子는 減少現狀을 보이고 있으며 男子도 36~40歲가 10.7%에 不過하다.

全體職員의 年齡이 21~30歲가 58.8%나 차지하는 것은 高度의 學歷과 長期間의 勤務經歷을 가진 專門職司書가 많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 2. 勤務期間 및 資格

職員들의 勤務期間은 5年未滿 勤務者가 71.4%나 되며 3~5년이 30.3%로 가장 많은 比率을 나타내고 10年以上의 勤績者는 10.5%에 不過하다.

司書資格은 正司書 38.3%, 準司書가 42.8%이고 無

資格者가 18.7%나 되며 勤務期間別 資格은 3~5년이 31.8%로 가장 많고 1~2년이 19.7%, 6~10년이 18.6%, 1年以內가 16.4%의 順으로 나타내고 있다.

資格面에서 볼때 正司書가 38.3%에 不過하며 無資格者(18.7%)가 專門職司書職務를 擔當하고 있다.

#### 3. 業務別 學歷 및 資格

學歷은 大學卒業以上이 44.5%, 初大 및 高卒이 55.5%로 大學圖書館 專門職司書로서는 낮은 學歷을 나타내고 있다.

業務別로는 大學이 收書業務 56.2%, 整理業務 51.1%, 參考業務 42.1%, 閱覽業務가 11.7%의 順이고, 資格面으로는 正司書가 整理業務 55.8%, 收書業務 37.5%, 參考業務 36.8%, 閱覽業務 17.6%의 順으로 奉仕業務에 資格者가 적은 것은 改善이 있어야 하겠다.

#### 4. 學歷別資格과 資格取得

大學以上の 學歷所持者중 正司書資格者가 43名의 76.7%(33名)로 가장 많고 準司書는 高等學校卒業者가 52.0%로 가장 많았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大學卒業者 11名 大學院卒業者 3名의 準司書와 大學卒業者 3名의 無資格이란 有能한 專門職이 必要한 이때 司書養成制度의 問題點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욱이 大學圖書館學科 出身者의 資格者가 26.3%에 不過함은 아직도 專門職教育을 받은 많은 司書가 國立大學校圖書館에 進出하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 5. 外國語解得能力

外國語의 解得能力은 必要한 外國語中 英語의 中程度가 50.8%이고 其他 外國語는 中程度가 20% 未滿이고 上程度는 英語가 7.1%, 其他 外國語는 5% 未滿으로 外國語의 解得能力은 大端히 低調함을 보이고 있다.

#### 6. 海外研修 및 見學

司書들의 學歷水準向上과 見聞을 넓히기 위하여 海外研修나 見學등의 機會가 있는가에 全體 112名中 5名으로 4.4%에 不過하다 보다. 積極的인 方法으로 先進外國의 새로운 圖書館學이나 또는 圖書館運營 方法을 習得하기 위해서 海外研修 및 見學을 할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B. 職務資質要求의 要求現況

##### 1. 職務別 男女 要求

全體的으로 性別 要求는 男子가 43.7%, 女子가 16.0%, 性에 關係 없다가 30.3%, 無答 9.8%로 男子를 要

문제” 國會圖書館報, Vol. 2. No. 12 (1965. 12), 申學均, “사서직공무원에 대한 대우개선문제”, 國會圖書館報, Vol. 2. No.12 (1965. 12).

21) 千惠恩,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司書職과 學的 背景問題” 道赫월보 Vol.9, No.4. 1965. 4, pp.9—10.

22) 嚴圭生, “司書職의 人事管理” 道赫월보 Vol.16. No. 4 (1975. 4), p.12.

求하는 比率이 女子의 要求보다 2.7배가 넘는다. 業務別로는 收書業務가 이상하게도 女子의 要求가 단 1名도 없음을 나타냈고 그 외는 別다른 特色은 없었다.

2. 職務量

職務量에 있어서는 適合하다가 48.2%, 過多하다 23.2%, 時間여유가 있다 18.7%의 順으로 나타내고 있다.

비단 圖書館職務에 限한 問題만이 아니고 어떤 職務이든 能力에 알맞는 職務量이 주어져야 所期의 目的을 效率의으로 達成할 수 있을 것인데 職務量이 過多하다의 23.2%도 問題가 되겠으나 時間여유가 있다의 18.7%는 더욱더 問題點이라 하겠다. 앞으로 보다더 具體的인 職務分析을 통하여 能力에 알맞는 職務分擔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3. 他職務遂行과 그 理由

擔當職務以外에 他職務를 遂行한다에 자주있다 15.1%, 가끔있다 54.4%, 전혀없다 16.9%, 無答 13.3%로 나타났다. 그 理由로서는 全般的인 人員不足 34.8%, 專門人員不足이 23.2%로 絶對人員數의 不足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4. 現職務에 대한 不滿과 그 理由

相當職務에 대하여 滿足하다 15.1%, 普通이다 31.2%, 不滿足하다 19.6%, 轉職하고 싶다 18.7%이고 男女別로는 不滿足, 轉職등이 女子보다도 男子가 많았다.

現職務에 대한 不滿理由는 原則的으로 不滿이나 轉職을 나타낸 數字가 되어야 하겠으나 職務 그 自體에는 不滿이 없으나 다른 理由로 不滿의 理由에 答이 많다고 하겠다. 不滿理由로서는 待遇가 좋지 않다 43.7%, 昇進機會가 없다 20.5%, 性格에 맞지않다 16.0%, 보람을 못 느낀다 10%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離職의 可能性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5. 現職務遂行에 要求되는 適當한 年齡 要求

現職에 適當한 年齡이 26~30歲가 31.2%, 31~35歲가 15.1%, 36~40歲 11.6%, 41~45歲 8.9%, 46~50歲가 7.1%, 21~25歲 5.3%의 順과 年齡에 關係없다 20.5%를 나타냈고 業務別로는 別다른 差異가 없었다.

現職務遂行에 適當한 年齡이 26~30歲가 31.2%로서 가장 높고 다음이 31~35歲가 15.1%라는 것은 國立大學校圖書館이 아직도 高度의 學歷과 長期勤績의 經驗을 必要로 하는 大學圖書館다운 奉仕業務를 하지 못하는 現狀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

6. 現職務難易度

相當職務의 難易도는 適當하다, 複雜多樣하여 씩차다가 各各 33.9%, 너무 單調하고 쉽다 25.0%인데, 複雜하다 33.9%와 너무 單調하다의 25.0%는 改善해야할 問題點이다.

7. 學歷要求

相當職務를 遂行하는데 必要한 學歷의 要求는 全學問分野의 大學程度가 41.9%로 가장 많고 全學問分野의 大學院程度와 特定 學問分野程度가 14.2%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大學圖書館이 本來의 機能을 發揮하는데 要求되어지는 學歷이라고 하겠다.

8. 外國語能力要求 및 必要 諸 外國語 要求

外國語의 能力 要求는 業務別 關係없이 大端히 높은 水準을 要求하고 있다. 즉 大學敎養外國語 程度의 能力이 가장 높은 39.2%, 大學外國語專攻 程度 38.3%, 大學院外國語專攻 程度 6.2%로 水準높은 外國語의 能力을 要求하며 또한 必要한 外國語의 種類도 英語를 비롯하여 여러 外國語가 必要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 比率을 大學圖書館에 所藏되어 있고 利用되어지는 資料와 比例하는 現象을 보이고 있다.

9. 現職務遂行上 더 必要한 教育要求

擔當職務를 圓滿히 遂行하기 위하여 더 必要한 教育으로서 外國語 41.0%, 全學問分野 28.5%, 一般敎養 18.7%, 圖書館學 8.9%의 順으로 많은 教育要求를 보이고 있다.

10. 專門職務司書의 圖書館學 背景要求

大學圖書館의 專門職務司書로서 必要한 圖書館學은 一般大學卒業後에 圖書館學을 大學院에서 履修하는 것이 좋다가 50.0%로 가장 많고, 圖書館學을 大學에서 教育을 받고 一般大學院에서 特定主題의 學問을 履修하는 것이 좋다가 12.5%, 圖書館學專攻이 20.5%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專門圖書館司書가 專門分野의 學問背景이 있어야 함이 當然한 것과 같이 綜合大學校圖書館의 專門職務司書도 特定分野의 學問의 背景을 가진 後에 圖書館學教育을 받아야 한다는 反應을 보이고 있다.

11. 現職者 資質向上을 위한 現職教育

全國 國立大學校圖書館職員의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은 實施되지 않고 있다. 職務遂行上 더 必要한 教育要求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實情을 볼때 現職者의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의 機會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N. 大學圖書館 專門職務司書의 職務資質要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A. 大學圖書館 專門職務司書의 職務資質要件의 問題點  
大學圖書館司書의 職務資質要件分析 結果 問題點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1. 現職司書들중 專門職務司書로서 長期間의 勤務經歷을 가진 年齡層이 大端히 적으며 또한 長期勤績者가 없는 것은 舊은 人事移動의 結果라 하겠다.

2. 現職司書들의 大學卒業以上の 學歷을 가진 者와

正司書資格을 가진 司書는 各各 現職員의 50% 未滿을 차지할 뿐이며 專門職 業務를 無資格者가 擔當하고 있는 實情이다.

專門職司書의 不足은 勿論 全般的인 人員不足으로 職務量의 過多와 擔當職務以外的 業務遂行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4. 待遇가 좋지 않다, 昇進機會가 없다 등의 職務에 對한 不滿으로 離職의 可能性이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5. 專門職司書는 大學以上の 學歷과 大學院에서의 圖書館學履修라는 高度의 學歷을 要求하고 있어 現在의 專門職司書養成制度에 대한 問題點을 나타내고 있다.

6. 現職者들의 여러 學問分野에 대한 研修教育을 願하고 있으나 現職者의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을 實施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B. 大學圖書館 司書의 職務資質要件의 改善方案

1. 司書職制度에 대한 改善方案

a. 司書의 資格基準 改善方案

우리나라의 司書資格은 圖書館施行令 第1條4項에 「司書職員의 資格은 正司書와 準司書로 한다」<sup>23)</sup>는 規定에 의하여 司書職의 資格制度를 마련하였는데 이와 같은 基準으로서는 有能한 司書를 採用할 수가 없다. 그래서 外國의 司書資格基準을 參考로 하여 司書의 資格基準을 마련하고자 한다.

外國의 司書資格에 關하여 살펴 보려는 世界 어느나라이든 司書들은 司書資格 取得을 要件으로 하고 있다.

“美國”

學士學位를 가진 者를 入學資格要件으로 하며 一年間으로 圖書館學碩士學位(Master of Arts 또는 Master of Science in Library Science)를 取得하며, 다시 一年間 專門코오스를 하며는 Post-Master의 學位를 받으며 卒業生을 프로로 資格을 賦與하고 있다.<sup>24)</sup>

“英國”

大學에 1~2年 課程의 圖書館學校가 있으며 入學資格은 學士學位를 가진 者로 하고 있다. 司書資格은 試驗에 의하여 學歷의 制限은 없으며 合格하면은 Chartered Librarian이라고 하는 公認된 司書資格證을 받는다. 이 Chartered Librarian에는 Associate of the Library Association인 初級司書와 上級司書인 Fellow of the Library Association이 있다.

“佛蘭西”

國立高等圖書館學校가 있으며 入學資格은 大學 卒業者를 原則으로 하나 Sous-bibliothecaire로 5年 以上の 經驗을 가진 者도 入學할 수 있다. 司書資格區分은 Conservateur와 Sous-bibliothecaire로 區別하며 Conserva-

teur는 國立高等圖書館學校를 修了하고 이른바 上級司書免許狀을 取得하여야 한다.<sup>25)</sup>

위와 같이 몇몇 外國의 司書資格取得 過程을 보려는 우리나라 司書資格基準이 제일 낮음을 알 수가 있다.

司書의 資格基準 改善을 試圖한 內容을 보려는

韓國圖書館協會의 圖書館法施行令 改正案(1976年)의 第3條1項에 「司書의 區分은 專門司書, 正司書, 準司書로 한다」라고 하여 專門司書라는 새로운 資格을 新設하고 그 資格條件의 基準을 높게 하였다.<sup>26)</sup>

李澤淵은 現行의 正司書·準司書制의 2單位를 4單位로 規制하는 制度<sup>27)</sup>를 提議하였고, 한상완은 大學 및 研究圖書館의 專門司書의 資格을 “專門司書의 資格을 위한 名稱구획시안”<sup>28)</sup>을 提示하고 있다.

위의 몇가지 司書의 資格基準 改善案을 參考로 하여 다음과 같이 司書의 資格基準의 改善案을 提示하는 바이다.

專門職司書의 資格基準改善案

資格 級數	資 格
1 級	① 2級 司書로서 碩士以上の 學位를 所持하고 圖書館實務經驗 또는 研究經歷 2年 以上인 者 ② 2級 司書로서 圖書館 實務經驗 또는 研究經歷 6年 이상과 圖書館學에 關한 論文 6篇 以上을 發表한 者
2 級	① 大學의 圖書館學科를 卒業한 者 또는 同等以上の 學歷이 있는 者 ② 大學卒業者 또는 이와 同等以上の 學歷이 있는 者로서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에서 圖書館學에 關한 學點 30學點 이상 取得한 者
3 級	① 初級大學(專門學校包含) 圖書館學科 卒業者

b. 司書職의 職級 改善方案

우리나라의 司書職級은 1971年 11月 3日 改正된 公務員任用令에 의하면 전 보다 더 後退한 地位를 부여하고 있는 現實이다.

司書의 職級改善을 試圖한 內容들을 보려는

金基泰는 行政職群에서 司書職級 改善案에서 司書職列을 1級까지 上位하는 職級을 賦與하는 方法과 學事

23) 文敎法典編纂會 엮음, 문교법전[學事篇](서울: 교학사, 1975), p.417.

24) 國立中央圖書館 編, “美國의 司書職制度” 圖書館, Vol. 9. No.5 (1974. 5), pp.31~32.

25) 梁泰鎭, “主要國의 司書資格取得과 處遇” 國會圖書情報, Vol.12. No. 6 (1975. 9), p.14.

26)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法施行令改正(案), 1976.

27) 李澤淵, “司書養成制度和 將來, 도서관 Vol.29. No.4. (1974. 4), p.28.

28) 한상완, “專門司書職의 發展論” 도서관, Vol.29. No.5 (1974. 5), p.18.

群에 編入하고 1級까지 級類를 올린다는 方案<sup>29)</sup>과 專門職 職員에 대한 教授身分 賦與 方案<sup>30)</sup> 및 韓國圖書館協會의 圖書館法施行令改正(案)의 大學圖書館基準(別表 2)에 大學圖書館職員의 配置에 있어 “①專門司書는 그 大學의 教授任用規定에 依據 任免 및 昇級을 實施하여야 한다.”<sup>31)</sup>라는 司書職級의 改善에 대한 여러 方案을 參考로하여 다음과 같이 專門職司書의 職級에 對한 改善案을 提出하여 보았다.

專門職司書의 職級改善方案

區分 職級	進級에 必要한 要件	職名 또는 職務
教授	1級 司書資格 所持者로서 大學 또는 研究圖書館에서 副教授以上의 經歷을 가지고 大學 또는 研究圖書館에서 實務經歷 또는 研究經歷 7年 이상과 圖書館學에 관한 論文 3篇 以上 發表한 者	圖書館長
副教授	1級 司書資格 所持者로서 大學 또는 研究圖書館에서 助教授 以上의 經歷을 가지고 大學 또는 研究圖書館에서 實務經歷 또는 研究經歷 5年 이상과 圖書館學에 관한 論文 3編 以上 發表한 者	圖書館副館長 또는 課長
助教授	1級 司書資格 所持者로서 大學 또는 研究圖書館에서 專任講師 以上의 經歷을 가지고 大學 또는 研究圖書館에서 實務經歷 또는 研究經歷 3年 이상과 圖書館學에 관한 論文 3篇 以上 發表한 者	課長 또는 主任司書 專門職 職務
專任講師	1級 司書資格者	專門職 職務 또는 보조 職務
助教	2級 司書資格者	專門職 職務의 보조

c. 司書職의 報酬 改善方案

專門職司書의 資格을 取得하고 教育公務員法 第26條(教授 등의 任用)와 第27條(專任講師 助教의 任用)에 의하여 該當 職級에 任用이 되면 同法 第33條(報酬決定의 原則)와 第34條(報酬에 관한 規定)의 適用을 받아 當然히 現職教授職과 同一한 報酬를 받게 됨으로 自然히 待遇의 改善은 이루어질 것이다.

2. 專門職 司書養成制度의 改善方案

첫째, 大學院 圖書館學科 教育이 大幅 擴充 強化되어야 한다.

둘째, 大學의 圖書館學科 및 初級大學(專門學校 包含) 圖書館科 以外의 司書養成 機關은 모두 廢止하여야 한다.

셋째, 現職者들을 위한 現職教育實施가 있어야 하겠다.

위와 같이 提示한 改善方案이 이루어지면 大學圖書館의 專門職司書는 高等의 學問水準을 갖춘 有能한 司書가 確保될 것이며 圖書館職은 尊敬받을만한 그리고

個人的으로 滿足할 수 있는 一生의 職業으로 생각하고 不平과 離職을 하지 않고 長期間의 勤績으로 積極的인 圖書館奉仕의 機能擴大과 大學圖書館의 發展은 勿論이요 大學發展의 기틀이 마련되어질 것이다.

V. 要 約

本 論文은 現在 우리나라 國立大學校圖書館의 專門職司書의 資質要件에 관한 實態를 分析 考察하고 問題點을 摘出하여 改善方向을 提示하였다.

大學圖書館이 그 大學教育에 있어서 모든 研究調查活動의 源泉이 되고 質의水準이 높은 利用者의 增加와 教育의 새로운 生産을 가져온다고 할때 결코 放心分野로 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제일 큰 關心은 圖書館에 두어야 하고 圖書館의 奉仕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도록 發展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레서 本 論文에서 大學圖書館의 專門職司書의 資質要件이 圖書館 機能 發揮에 基本的인 要因으로 보아 그 實態를 分析 考察한 結果 現實的으로 提起되는 問題點 즉, 圖書館法施行令上의 問題點, 公務員任用令上의 問題點, 司書養成 制度의 問題點, 등을 外國의 制度와 文獻을 通하여 比較檢討하여 우리나라 實情에 맞고 綜合大學圖書館 專門職司書로서 資質要件을 갖출 수 있도록 制度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改善策을 擔當하였다.

첫째, 圖書館法施行令의 改正方案

둘째, 專門職司書의 教授職으로 任用

셋째, 專門職司書養成制度의 改善方案을 論하였다.

그러므로 本論文은 大學教育의 中樞의 機關인 圖書館專門職司書는 教授職과 대등한 資格과 待遇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는 것이며 앞으로 大學圖書館 專門職司書制度 確立에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29) 金基泰, “司書職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 도서관, Vol.29, No.5. (1974. 5), pp.27-28.

30) Gelfand, M. A., 前掲書, p.73.

31) 韓國圖書館協會, 前掲書, 1976.